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-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”을 “구분에 따른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영 제154조제3항제1호의 경우 :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·제6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

2. 영 제154조제3항제2호의 경우 : 제1항제1호부터 제3호, 제5호·제6호 및 제8호·제9호의 기재사항

⑤ 영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다.

1. 영 제154조제5항제1호의 경우 :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·제6호의 기재사항

2. 영 제154조제5항제2호의 경우 : 제1항제1호부터 제3호, 제5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

3. 영 제154조제5항제3호의 경우 :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기재사항

제3-14조 중 “자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”를 “자를 말한다.”로 한다.

제3-15조제3항제3호가목 중 “약력”을 “세부 경력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후보자(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)의 직무수행계획
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·서명

사.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

제3-15조제3항제4호가목, 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“라목”을 각각 “라목, 바목 및 사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경우에는 당기 및 전기의 이사의 수와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”을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당기 및 전기의 이사의 수

나. 당기의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

다. 전기의 이사 전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최고 한도액

제3-15조제3항제10호 중 “경우에는 당기 및 전기의 감사의 수와 감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”을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당기 및 전기의 감사의 수

나. 당기의 감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

다. 전기의 감사 전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최고 한도액

제4-3조제1항제3호차목 중 “제42조제5항”을 “제42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카목”을 “카목, 파목”으로 한다.

과. 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의 현황(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자에 한한다)

하.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(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)와 회계감사인이 논의한 결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-10조제3항 및 제5항, 제3-14조, 제3-15조제3항제3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, 제4호, 제5호가목, 제9호,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보고서등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4-3조제1항제3호차목, 파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등 제출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장 기업의 인수·합병관련제도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제3-10조(보고서의 기재사항) ①·② (생략) ③ 영 제154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 1. 제1항제1호·제2호·제5호·제6호의 기재사항 2. 주식등의 보유기간 중 영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3장 기업의 인수·합병관련제도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제3-10조(보고서의 기재사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구분에 따른 사항-----. 1. 영 제154조제3항제1호의 경우 :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·제6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2. 영 제154조제3항제2호의 경우 : 제1항제1호부터 제3호, 제5호·제6호 및 제8호·제9호의 기재사항 ⑤ 영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다. 1. 영 제154조제5항제1호의 경우 :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·제6호의 기재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제3-14조(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)
영 제154조제2항에서 “보고내용
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
요가 있는 자”란 영 제10조제2
항제9호, 제3항제1호부터 제8호
까지,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
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
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
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
제3-15조(참고서류) ③ 제1항에
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
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
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
한다. 다만, 권유자가 해당 상장
주권의 발행회사, 그 임원 또는
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
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

2. 영 제154조제5항제2호의 경
우 : 제1항제1호부터 제3호,
제5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
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
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
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
니하겠다는 확인

3. 영 제154조제5항제3호의 경우
: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
5호의 기재사항

제3-14조(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)

----- 자를
말한다.

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
제3-15조(참고서류) ③ -----

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
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
있다.

1. 2. (생략)

3.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
우

가. 후보자의 성명·생년월일·
주된 직업 및 약력

나. ~ 라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4.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
관한 것인 경우

가.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
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
우에는 제3호가목, 다목 및
라목의 내용

나.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
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관한
것인 경우에는 제3호가목,
다목 및 라목의 내용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가. -----
----- 세부 경력사항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후보자(사외이사 선임의
경우에 한한다)의 직무수행
계획
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
항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
보자의 확인·서명

사.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
추천 사유

4. -----

가. -----

----- 라
목, 바목 및 사목-----

나. -----

----- 라목, 바목 및 사목-----

5. 감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

가. 권유시에 감사후보자가
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3
호가목, 다목 및 라목의 내용

나. (생략)

6. ~ 8. (생략)

9.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에 관
한 것인 경우에는 당기 및 전
기의 이사의 수와 이사 전원
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
한도액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10.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에 관
한 것인 경우에는 당기 및 전
기의 감사의 수와 감사 전원
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
한도액

<신설>

5. -----

--

가. -----

----- 라목, 바목

및 사목-----

--

나. (현행과 같음)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

----- 경우

가. 당기 및 전기의 이사의 수

나. 당기의 이사 전원에 대한

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

다. 전기의 이사 전원에 대한

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

최고 한도액

10. -----

----- 경우

가. 당기 및 전기의 감사의 수

<신 설>

<신 설>

11. ~ 20. (생 략)

④ (생 략)

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

제2절 사업보고서등의 공시

제4-3조(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)

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 략)

3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가. ~ 자. (생 략)

차.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 (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한한다.)

카. · 타. (생 략)

<신 설>

나. 당기의 감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
다. 전기의 감사 전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최고 한도액

11. ~ 20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

제2절 사업보고서등의 공시

제4-3조(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)

①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
차. -----
-- 제42조제6항 -----

- 제42조제6항 -----

카. · 타. (현행과 같음)

파. 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

<신 설>

②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
는 제1항제2호와 제3호 바목, 차
목, 카목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
영향을 미칠 우려가 낮은 사항
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
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.

③ ~ ⑧ (생 략)

<신 설>

칙」 제4조제1항제4호에 따
른 근로자의 현황(「고용정
책 기본법」 제15조의6제1항
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형태
현황을 공시하는 자에 한한
다)

하.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
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
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
사위원회(감사위원회가 설
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
를 말한다)와 회계감사인이
논의한 결과

② -----

--- 카목, 파목 -----

---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
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-10
조제3항 및 제5항, 제3-14조, 제
3-15조제3항제3호가목 및 마목
부터 사목까지, 제4호, 제5호가
목, 제9호, 제10호의 개정규정은
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<u>제2조(사업보고서등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4-3조제1항제3호차 목, 과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등 제출 분부터 적용한다.</u>
--	---